Jisung Horizon Newsletter

2008.10 Vol. 1

01 법률칼럼

• 소송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이호원 대표변호사)

04 세무법 해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시행 (류용현 회계사)

07 열려라 중국

• '노동계약법실시조례' 발표 (김옥림 중국변호사)

09 생생 러시아

• 사이프러스 세법 검토 (구상수 회계사)

11 Vietnam LIVE!

• 베트남 M&A (김상준 변호사)

13 주목! 이 판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다 46278 판결)

17 최신법령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제도 시행
-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법인세 공제, 최대 24만 원 유가환급금 지급 등
- 도시개발법상 지분쪼개기 방지
-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19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IFLR1000誌 2009 년 기업자문 전분야에서 우수 평가 획득
- 법무법인 지평지성 통합 완료
- 법무법인 지평지성 새 이 발표
- 이호원 대표변호사, '한·중 민사소송법 학회' 학술대회 개최
- 조용환 대표변호사, '참신나는일터' 설 립 협약식 참석
- 강성 대표변호사 ·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대사관 초청 경국절 행사 참석
- 김성수 변호사, 제17회 서울-중국 변호 사제17회 교류회의 참석 및 발표
- 강율리 변호사, '자산유동화 10년 회고 와 전망' 세미나 참석 및 발표
- 변희경 변호사,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위원 선임
-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 아카데미 '법무 업무 강좌' 강의

29 업무동향

- 미리넷솔라(주) 510억유치 법률자문
- (주)에코에너지홀딩스 2500만불 투자유 치 법률자문

31 영입인사

- 송기방 고문변호사
- 이춘원 변호사
- 홍성준 변호사
- 김주현 변호사
- 김범희 변호사
- 신진호 변호사
- 송유진 영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 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 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 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건생의 변호사 및 전문가 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소송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 진실된 법정을 위하여



이호원 대표변호사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 입니다. 그로써 일단 일어난 분쟁을 딛고 넘어서 다음 단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정과 중재 등 각종의 분쟁해결수단이 마련되 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그 결과물인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 러한 각종 분쟁해결수단 중 가장 워칙적이고 다른 모든 분쟁해결수단의 절차진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단순한 민사분쟁의 해결방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사회적 분쟁해결의 기본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문화와 여건에 맞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지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연전에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소 광희 교수님의 신문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를 이루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 다고 하시면서 거짓말이 많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필자로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거짓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가진 자료를 공유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분쟁을 법정에 가져오더라도 다시 소송이라는 게임을 거쳐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회의 공식 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장인 법정에서 진실된 주장과 증거들만이 나오도록 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올바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이념을 전제로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구체적인 성과로는 대법원에서 주도하여 2002. 1. 26. 법률 제

6627호로 전문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개정은 전문개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전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개정이며, 이로서 우리로서는 선진적이면서 도 한국적인 민사소송법을 지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단순히 법학 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질적인 향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민 사소송법 중 가장 중요한 점을 두 가지 든다면, 첫째 심리의 충실과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제1심 소송구조를 대폭 개편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인정하면서, 공식적인 변론절차에 앞서서 변론준비절차, 즉 반드시 서면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를 단계 적으로 거쳐서 철저히 변론을 준비한 뒤에만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는 효 율적이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에서 문서제출의무를 증인의무와 같이 일반의무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문서정보 공개제도를 신설한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다 신속히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증거확보수단을 확충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는 다른 선진제국의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실된 법정을 만들기에는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만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송당사자 및 제3자가 사실관계의 해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이 른바 일반적 사안해명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람직한 소송의 모습은 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니고 있는 증거방법을 교환하여 무기대등의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 도록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의 인정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제3자가 지닌 자료를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 작업이 완전하게 행하여 진 때 쌍방 당사자의 사실인식은 대체로 일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판결이 불필요하게 되든가 화해율이 최대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이미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가지고 있든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수가 가능한 때 비로소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본안판단에 필요한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에게 불리한 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 를 지게 하고, 또 제3자에 대하여서도 사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필요한 모든 정보와 증거 방법을 제출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앞서 든 일반적 사안해명의무를 당장 도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증거수집절차를 확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급한 과제로서 이를 통하여 앞으로 사 안해명의무의 도입을 위한 밑받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증 거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완비된다면 사건에 관한 풍부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토대 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보다 용이해 질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디스카버리제도나,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 니다.

끝으로 소송의 개선이라고 하는 과제, 특히 진실된 법정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법원뿐만 아 니라 소송관계자 전원의 이해와 노력, 특히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법관 및 변호사가 법조로서의 높은 윤리관 을 지니고 민사소송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호사들로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해석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인정 되고 있는 진실의무, 즉 당사자에게 사실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진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 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이에 철저하게 입각한 소송진행을 통하여 진실된 법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Jisung Horizon

*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법학원 발간 저스티스 2006/7호에 실린 拙稿 "2002年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앞으로의 課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 해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시행



류용현 회계사

국세청은 지난 9월 18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이하 "사전답변제도")를 10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전답변제도란 신청인이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기초하여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된 경우 국세청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납세자의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고, 납세자의 명의가 아닌 가·차명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과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세무처리를 한납세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기 힘들었고, 국세청은 납세자와조세분쟁으로 인해 징수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납세자가 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세관청 스스로를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과거보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고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기초로 사전답변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사전답변 신청은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 또는 장래의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

한편, 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로 제한됩니다.

[신청대상]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관청의 사전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2.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 3.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
-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세청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경우
- 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인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구하는 경우 신청인의 실명, 구체적인 사실관계, 세법해석의 신청내용,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판례 및 신청인의 의견을 기재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전답변을 구하는 특정한 거래가 장래 거래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사전답변 신청은 개별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절차 및 답변배제]

국세청은 사전답변 신청서의 내용 및 보정 내용(국세청은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에 기초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서식에 답변 내용을 기재하여 답변합니다.

만일 사전답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 1. 신청을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2. 신청의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 3. 신청인에게 제8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그 거래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 답변 내용에 따르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사전답변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납세자는 불확실한 세무 위험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과세관청도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정 거래 또는 장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므로, 영업 비밀의 노출이나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답변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isung Horizon

(열려라 중국)

'노동계약법실시조례' 발표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8일에 '노동계약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를 발표하여 당일로 시 행에 들어갔습니다.

'실시조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계약법' 시행 후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편향되어 기업에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주장도 약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근로자의 권익 강화의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실시조례'는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14가지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종신제 고용' 또는 '철밥통'으로 비유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4가지 사유는 '노동계약법'에 산재하 여 있던 규정들을 한 조항에 집중하여 규정한 것일 뿐 기업의 고용보장 의무에는 특별한 변 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조례'는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10년 근속기간의 기산시점과 관련하여 '노동계약법' 시행 전의 노동기간을 포함하여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명시함으로 써 근속기간 계산에 관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이 외 '실시조례'에서는 경제보상금 지급 기 준인 월급에 대하여 시간당 또는 실적별 급여,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을 포함한 화폐수입 이라고 규정하여 '노동계약법' 시행 후 일부 기업이 여러 명목으로 월급을 세분화하여 지급

기준 금액을 최소화하는 추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노동계약법' 시행 후 파견근로자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하여 파견업체 설립이 불 가한 경우를 확대 규정하고, 파견업체의 노동자 고용형태에 대하여 비전일제(非全日制) 형식 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를 제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실시조례'에서는 근로자가 서면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기업에게 노동계약 해지 권을 부여하고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가 서면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기업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을 면제하여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입법의 지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조례'는 '노동계약법' 시행 후 근로자 측에 지나치게 편향되었다는 기업인의 강한 주장 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기업측에 유리한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지만, 근로자의 이익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여전히 유지되어 '실 시조례'를 통한 기업부담의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Fisung Horizon

(생생 러시아)

사이프러스 세법 검토



구상수 회계사

사이프러스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러시아 투자를 위한 경유지국으로 이용되는 나 라입니다. 사이프러스가 러시아 투자를 위한 경유지국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러시아와 이중 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리한 조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이프러스의 주요 조세제도

사이프러스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이프러스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외국법인이 영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한 사이프러스 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이프러스 법인이 받은 이자의 경우 총 이자금액에서 5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지급이자가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이프러스 법인이 외국 인 주주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경우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방위세(취득한 총 이자액의 10%, 총 배당소득의 1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방위세가 면제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총 이자액의 50%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러시아 및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사이프러스가 러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살펴보면, 사이프러스 거주자가 러시아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USD100,000이상의 직접투자 시에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기 타의 경우에는 10%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자소득・러시아회사의 지분매각・사

용료소득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사이프러스는 한국과 별도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이프러스에서 한국으로의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지급 시에는 사이프러스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결론

사이프러스는 회사의 설립과 유지가 편리하고, 유리한 조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러시아 투 자를 위한 경유지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투 자구조의 경우 평판의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하여 유럽 국가(네덜란 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사이프러스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과세당국 이 다소 세밀하게 조사한다고 하므로 사이프러스를 통한 투자 시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Jisung 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 M&A



김상준 변호사

PWC 베트남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2006년 38건, 2 억 9900만달러 규모에서, 2007년에는 113건 17억 5300만달러로서, 건수기준 약 300%, 금액 기준 약 600% 증가하며, 2008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금액 기준으로 보면 금융관련 분야 M&A가 약 73%, 식음료 관련 분야가 약 10%,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광업, 여행,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HSBC의 베트 남 최대보험사 Bao Viet 지분 10% 인수, 일본 Sumitomo은행의 베트남수출입은행 (Eximbank) 지분 15% 인수, 한국 롯데제과의 베트남 상장법인 Bibica 지분 30% 인수 등이 주요한 M&A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는 대상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할 목적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합병 (Merger), 지분 51% 이상 취득하는 주식매수(Stock Deal)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M&A를 이야기할 때에는, M&A를 과반수를 넘지 않는 지분투자, 경영지배권 을 가지지 않는 지분투자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 처럼 기존 베트남 기업 지분 인수 비율에 일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원칙적으로 이사 선출 등을 위한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 주주 의 65%(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 출석 지분의 65%)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론적 으로는 안전하게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5% 이상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정관변경 등 특별결의사항은 출석 주주 75%를 결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싶다면 75%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광고업(현재 51%, 2009년 99%까지 개방)과 같이 외국인지분제한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합작법인 설립단계에서는 한국기업 등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65% 또는 75%를

가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의 방식이든 구주매수의 방식이든 기존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위와 같은 비율만큼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는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기업의 경우 법령간의 충돌이 정돈되지 않아 실무상 30% 이상의 기존 베트남 기업 지분을 취득하고 자 할 때 지분양도 관련 담당기관 심의과정에서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 (51%), 영화배급(51%) 등 WTO 양허안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외국인 보유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내수시장 자체를 공략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측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방식보다, 기존에 검증된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참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유통업, 교육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시키는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베트남 당국도 비상장 기업 인수 관련 외국인지분제한 여부 등 실무상 혼란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M&A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M&A 관련 규제와 법령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면 한국기업의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목! 이 판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다 46278 판결
-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서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민법 제741조),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종래 통설은 이득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부당이득의 요건을 ① 법률상 원인의 결여, ② 이득의 취득, ③ 손해의 발생, ④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로 나누어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유형론은 각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이득의 유형(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형론에 의할 때 급부부당이득이란 계약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가 행하여졌으나 그 법률행위가 무효・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침해부당이득이란 침해자가 손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재산적 이익이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한편 3자 이상의 다수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유형은 ① 재산의 이전이 직선적 으로 연속되는 소위 '직선연결형'과 ②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의 이전이 1회로 그치는 소위 '삼각관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청구의 내용

이 사건의 원고들은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재건축의 시공사인 B건설입니다. 원고들은 정관 및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A재건축조합에 대해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A재건축조합은 피고와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 및 정산총회의 결의에 따른 A재건축조합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 부담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위 임시총회 및 정산총회의 결의에 는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고는 A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이고, 조합 사무실 옆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분양 계약의 체결, 대금수납·관리 등 제반 분양업무를 포함한 재건축조합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추가부담금 납부에 관한 위 임시총회 및 정산총회의 결의를 주도하고 그 이행을 사실상 강 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추가부담금 납부에 관한 위 임시총회 및 정산총회 결의의 부존재(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추가부담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 니다.

- (2) 이 사건의 쟁점
- ① 먼저 계약의 일방당사자(원고들)가 계약 상대방(A재건축조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 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원고들)가 제3자(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② 나아가 제3자(피고)가 급부(추가부담금 등)를 수령할 때 계약의 일방당사자(원고들)가 계 약상대방(A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임시총회 및 정산총회 결 의)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년 6월 14일 선고 2004나 27350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① A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등 납부를 결정한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정산총 회의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이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재건축조합과 피고의 추가부담금 등의 부과에 따라 이를 납부 하였다.

- ② 따라서 원고들은 그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금원을 공사대 금 등에 충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이득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
- ③ 피고는 직접 또는 A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추가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였 으므로 그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쟁점 ①).
- ④ 설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시총회 및 정산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그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쟁점 ②).

4. 대법원의 판단과 대상 판결의 의의

(1)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① 피고가 A재건축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행한 것은 A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 사업공사계약의 약정이나 사실상의 업무협조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 고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추가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는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한 급부는 원고들의 A재건축조합에 대한 '추가부담금 등의 납부의무' 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A재건축조합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 의 이행으로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조합의 지시 등으로 그 급부과정을 단축해 원고들 이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것으로 평가된다(삼각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급부).
- ② 원고들이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임시총회와 정산총회가 부존재 또는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A재건축조합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원고들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 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있다(쟁점 ①).
- ③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추가부담금 등 납부의 법률상 원인 이 된 임시총회와 정산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

다(쟁점 ②).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알 수 있었을 경우 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년 6월 13일 선고 2003다 8862 판결은 '손실자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당하 였을 때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침해부당이득관계)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손실자 가 스스로 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경우(급부부당이득관계)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 다.

(2)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미 첫번째 쟁점에 관해서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 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과 동일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년 12월 26일 선고 2001다 46730 판 결 참조).

대상판결의 의의는 두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에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처음으로 '급부부당 이득관계'와 '침해부당이득관계'를 명시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유형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득의 유 형에 따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데 대상판결 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다 46278 판결

(최신 법령)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제도 시행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21007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394호, 2007. 4. 27. 공포, 2008. 9. 1. 시행)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검사는 강간, 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 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집행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 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다시 성폭력범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 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피부착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 착하는 부착장치(발목에 부착),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됩니다.

- 다운로드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법인세 공제,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 듲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9131호)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 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인당 30만원씩 공제받 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을 지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층 의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3. 도시개발법상 지분 쪼개기 방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19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안시, 조합설립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 필요한 토지소 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 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추진을 방 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4.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17호)

분양사업자는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미분양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 로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는 40%로, 공개모집 횟수는 2회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건 축물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건축물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중도금은 건축공사비가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에야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건축공사비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 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 공사비는 분 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번 개정으로 분양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 IFLR1000誌 2009년 기업자문 전분야 우수 평가 획득



(IFLR1000 - The guide to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law firms, http://www.iflr1000.com/)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세계적 법률잡지 IFLR1000誌의 2009년판 평가에서 기업자문 4개분야 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IFLR100誌의 2009년 기업자문 분야는 4개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으며, 법무법인 지평지 성은 '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Banking and project finance)'에서 2위를 비롯하여 '자본시 장(Capital markets)',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및 '구조조정 및 파산(Restructuring and insolvency)'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IFLR100誌는 지평지성 소개에서 '지평과 지성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국내 로펌 순위는 상당히 오르게 되고 경쟁력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IFLR1000誌는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지가 발행하는 월간지로서 금융관련 법률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국제금융계 인사들로부터 법률실무와 관련해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각 국가별 우수 로펌을 부문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 'IFLR 1000'는 전 세계 각국에서 우수 로펌 선택에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IFLR1000 financial law firm rankings - Asia-Pacific - South Korea - Financial and corporate

■ IFLR이 선정한 각 부문별 3위 이내 국내 로펌

구분	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Banking and project finance)	자본시장 (Capital markets)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구조조정 및 파산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1위	광장·김앤장· 세종·태평양	김앤장·세종	광장·김앤장·세종 ·율촌·태평양	김앤장·세종·태평양
2위	지평지성 ·율촌·화우	광장·율촌·태평양	충정	광장·양헌·율촌· 화 우
3위	양헌·충정·KCL	지평지성 바른·양헌· 에버그 린·KCL·화우	지평지성 양헌·화우	지평지성 KCL·충정

■ IFLR1000 誌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지성은 2008 년 5 월에 합병하였으며, 그로부터 2 개월 후 법무법인 김·장·리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을 했다. 이들 법무법인 및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중소형 로펌들은 법률 시장의 개방과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의 변호사 수가급증하는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지평과 지성의 합병으로 법무법인지평지성의 국내 로펌 순위는 상당히 오르게되고 경쟁력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변호사의 역량을 놓고 비교하면 법무법인지평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과 견줄 수 있다. 지평의변호사들은 자신의 업무와 팀웍에 대한 열정이었고 의뢰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노력한다"고 한 의뢰인은 말했다. 또 "그들은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아침 일찍법률 솔루션을 요구할 경우 밤을 세워 일할때도 많고 서비스 비용 또한 적절하다"고 했다.

보수적인 한국의 금융부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적대적 인수 건 중 하나인, 메리츠화재의 제일화재 인수를 위한 적대적 제안에 관해

Jisung Horizon Law Group

Horizon Law Group and Jisung Law Offices merged in May 2008, followed two months later by the merger of Kim Chang & Lee and Kim & Company. The impetus for them, as well as other small or mid-sized firms contemplating consolidation, is the desire to remain competitive, especially with the longexpected opening of the legal market to international firms, as well as a new law school system, which is expected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lawyers in Korea in the coming times. The merger of Horizon Law Group and Jisung Law Offices will certainly bolster the firm's ranks, and given the recent numbers game that domestic law firms are engaged in, could translate to increased competitiveness.

"Regarding the quality of the individual attorneys, I can compare Horizon Law Group directly with Kim & Chang, Shin & Kim and Yulchon. Each of the attorneys are very enthusiastic in their work, and in terms of teamwork, and try to make clients feel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메리츠화재를 대리하였고, 또 다른 M&A 거래로는 남양건설의 쌍용건설 인수 자문 건과 무림제지의 3000 억원대 동해펄프 인수 자문 건이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또한 포스코건설의 25 억불대 송도신도시개발사업 PF 자문과 10 억불대 국제파이낸스센터개발사업 자문을 PF 의 수행하였다.

한 의뢰인은 특히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고 수준인 두 변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어떠한 거래를 위해 로펌을 고용해야 할 경우 이병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매우 성실하며 변호사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통하다. 문성호 미국변호사는 이병기변호사와 훌륭한 팀을 이룬다"고 했다.

comfortable," says a client. "They provide the service on a timely basis. Sometimes they work all night long when the client wants to get the legal solution first thing in the morning. Also they provide a very affordable fee level."

In one of the first hostile takeovers in Korea's conservative financial sector. Horizon represented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Co in its unsolicited bid for First Fire & Marine Insurance Co. In other M&A transactions, the advised Namyang Construction in firm acquiring Ssangyong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represented Moorim Paper in its \$300 million acquisition of DongHae Pulp. Jisung Horizon Law Group also Posco represented Engineering Construction in the \$2.5 billion refinancing of Songdo International New development. On another large lending deal, the firm advised a syndicate in its \$1 billion financ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in Seoul.

One client singles out two of the firm's top lawyers for praise: "Whenever I need to hire a law firm for a specific transaction, I call Byoung-Ki Lee. He's a very diligent guy and the best of the best in the legal counsel universe. Sung-Ho Moon is a US attorney. He's a very good team with Byoung-Ki Lee."

(지평지성 소식)

아시아 대표로펌 법무법인 지평지성 새로운 출발

-'법무법인 지평지성(Jisung Horizon)' 합병 완료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지성(Jisung Horizon)'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구)법무법인 지성과 (구)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5월 22일 합병 발표 후 통합 작업을 진행하 여 9월 18일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탄생한 통합로펌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9월 22일 출범식을 갖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국내외 변호사 120여명을 보유한 새로운 대형로펌으로 이호원, 박동 영, 조용환, 강성, 양영태 변호사 등 5인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무소는 본사(남 대문 상공회의소 빌딩)와 강북 분사무소(남대문 HSBC빌딩) 및 강남 분사무소(역삼역 현대해 상화재빌딩)를 사용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M&A, 구조조정 및 도산, 민영화, 국제계약, 증권, ABS, Project Finance, SOC, 부동산, 건설, 조세, 노동, 공정거래, 환경, 지적재산권, 정보미디어, 보험 등 제 반 기업자문과 각종 소송 및 중재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성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해온 중국(상해지사), 베트남(호치민시티 지사)·아세안, 러시아·중앙아 시아 등의 해외업무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노이 지사를 신설하는 등 해외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및 M&A, 해외 Project Finance, 해외부동산과 자원개발 등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수준 높은 전문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 함과 동시에 윤리적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명문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기대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새 CI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상징하 는 새CI를 선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새 CI



심불마크 'Global Flower'

'Global Flower'라는 애칭이 붙은 새로운 심볼마크는 세 개의 원이 자유롭 게 뻗어나가고 들어오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지평지성이 세계를 향해 나아 가고자 하는 '진취성'과 '개방성'을 나타내는 한편 다양한 사고와 요구를 수용하고 화합해 나가는 '융화'의 이미지, 그리고 '진정한 법률적 동반자'로 서 고객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세 개의 원이 감싼 구는 'Global'과 'Core'의 의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표방

하는 지평지성의 미래 비전을 함축합니다.

새 로고의 글꼴은 정중함과 진지함을 나타내는 명조체를 맵씨 있게 표현함으로써 품위와 윤 리성, 공익성과 전문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주된 색상인 지평지성 파랑은 '신뢰'를, 보 조색인 지평지성 연두색은 '확장과 개방', 지평지성 회색은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새로운 CI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비전을 공유하는 한 편, 외부적으로는 지평지성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좀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 가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Disung Horizon

(지평지성 소식)

이호원 대표변호사, '한·중 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이호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는 중국민사소송법학연구회(회장 천꾸이밍 인민대 법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2008. 9. 27. 중국 북경의 인민대학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후원 아래 "제 1 회 한중 민사소송법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대회에서 먼저 양국 연구회 사이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측에서는 김도형 서울고법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원제도"를, 이동률 건국대 교수가 "한국의 판결절차"를, 한충수 한양대 법대 교수가 "한국의 민사집행절차 개관"을, 전병서 중앙대 교수가 "한국의 도산제도"를

주제로, 중국측에서는 탕웨이진 중국인민대 교수가 "중국의 민사법원 체제 및 그 개혁추세",를, 푸위린 교수가 "중국 민사재판의 기본유형과 구조"를, 시아오지엔구오 중국인민대 교수가 "중국의 민사집행제도"를, 지거페이 중국정법대학 교수가 "중국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와 파산제도"를 주제로 각 발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한국측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하여 양병회, 호문혁, 정규상, 손한기 교수와 장상균 인천지법 부장판사 및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25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lisung Horizon

[관련기사]

• 법률신문 - '한-중 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조용환 대표변호사, '참신나는일터' 설립 협약식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조용환 대표변호사는, 10월 7일 서울 장충동 '참신나는일터' 1호점에서 열린 '참신나는일터'설립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와 '참신나는일터'는 한국시티은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설립한 의류 생산 작업장으로, 노동계, 경제계,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참여성노동복지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isung Horizon

•뉴시스 - 참여성노동복지터-한국씨티은행-한국노총과 '참신나는일터' 설립

(지평지성 소식)

강성 대표변호사 ·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대사관 초청 경국절 행사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강성 대표변호사와 김옥림 중국 변호사는 중국대사관의 초청으로 9 월 29 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9 주년' 국경절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0 월 1 일 중국의 건국일을 축하하고, 중국 및 한국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Fisung Horizon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닝푸쿠이 "한중관계 새 역사적 출발점에"

김성수 변호사, 제17회 서울-북경 변호사회 교류회의 참석 및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제화위원회 위원자격으로 10월 8일에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7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율사협회 교류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교류회의의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노동법'으로, 한국측 발표자로 김성수 변호사가 "한국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을, 중국측 발표자로 왕건평 율사(변호사)가 "중국 노동계약법 반포실시후 중국내

외국 투자기업의 노동관리에 대한 법률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isung Horizon]

(지평지성 소식)

강율리 변호사, '자산유동화 10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 참석 및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강율리변호사는 2008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최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유동화 10년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하여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르지 않은 유동화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개선과제, 유동화와 도산절연, SPC의 법리 등 총 4개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 정부기관의 입장과 향후 자산유동화 시장의 전망을 살펴 보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isung Horizon

변희경 변호사,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위원 서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희경 변호사는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 행' 서울경인지역 솔루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후원하는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을 위한 본격 휴먼 솔류션 다큐멘터리로 서, 장애와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아와 가난 때문에 아이의 치료 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을 전문가 그룹을 연계해 실질적이고 지속

적인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Jisung Horizon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 아카데미 '법무업무 강좌'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2008. 9. 23 ~ 9. 24 동안 개최된 저작권 아카데미 '법무업무 강좌'에서 '저작권 계약 실무'를 강의하였습니 다.

이 강좌는 법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절차, 저작권 분야 판례, 계약 실무, 엔터테인먼트 관련법 등의 이해를 돕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isung Horizon

[강좌 개요]

• 기간 : 2008. 9. 23(화) ~ 9. 24(수)

• 장소 : 저작권아카데미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업무동향)

미리넷솔라 510억 유치 법률자문



지난 10월 2일 태양광전지 생산 전문기업 미리넷솔라가 호주계 M사가 주축이 된 투자 컨소시엄과 510억여 원 투자 협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하여 미리넷솔라를 대리하여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미리넷솔라, 호주계 M사컨소시엄 등과 510억여 원 투자조인식
- 서울경제 미리넷솔라 510억원 투자 유치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Jisung Horizon

(업무동향)

에코에너지홀딩스 2500만불 투자유치 법률자문

지난 7월 21일, ㈜에코에너지홀딩스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로부터 2천500만달 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하여 에코에너지홀딩스를 대리하여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 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골드만삭스, `에코에너지홀딩스`에 2500만달러 투자
- 머니투데이 골드만삭스, 에코에너지 20.98% 지분상당 CB보유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Jisung Horizon

(영입인사)



송기방 고문변호사

□학력사항

- 서울사대부고졸업(제 11 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59 학번, 제 17 회)
-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수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P 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ICP 과정수료

□경력사항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위촉교수(전)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전)
-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교육)(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전)
- 저작권위원회 위원(부위원장)(전)
- 총무처 사법시험위원(전)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위원(인쇄매체)(전)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전)
-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장(현)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평지성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게 된 송기방변호사입니다.

저는 1968 년에 초임법관으로 임명되어 1990 년에 고법부장판사를 사임할때까지 부산, 수원, 서울 등지에서 23 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가사,행정,신청,경매 등 여러분야의 재판실무를 담당하였으며, 1990 년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18 년간 부동산등기소송, 금융,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 등 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하여 왔고,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 여러의료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아 미개척분야이던 의료관련 소송에서 병원 및 의료진측의 민,형사변론을 맡는 의료전문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간 변호사 업무외에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재직하며 송무사건외의 각종 분쟁업무를 상담하고 소송전 분쟁처리를 담당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업무처리를 힘껏 도와드리며, 가일층 고객여러분에 대한 충실하고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사오니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입인사)



이춘원 변호사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84학번)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수료
-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졸업 (해상법 LL.M)

□경력사항

-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 변호사 개업
- 중앙일보사 편집국 전문위원 (부국장 대우)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동객원교수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춘원 변호사입니다.

지평지성에서 새롭게 출발하며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다와 배에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해상운 송·용선계약에 관한 국내외 소송 및 중재와 선박의 충돌·화재· 폭발이나 유류오염 등 해상재해의 조사 및 처리가 저의 주된 업무영역입니다. 항공, 제조물책임 및 언론 분쟁에 관하여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모두를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입인사)



홍성준 변호사

□학력사항

- 한성고등학교 졸업(33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84학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2007~2008)

□경력사항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육군 법무관
- 서울지방법원
- 서울행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삼척시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높고 푸르러 보이는 것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홍 성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1997년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첫발을 디딘 이후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민, 형사, 가사, 신청사건 등 일반적인 사건과 국제거래 사건, 각종 행정 및 조세 사건, 도산사건 등의재판실무를 담당하여 왔고, 2007년 여름부터 1년 간 UC Berkeley에서 Visiting Scholar로 체류하면서 도산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동료들과 함께 의뢰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 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률리스크의 해소와 분쟁의 해 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기대하겠습 니다. 풍성한 이 계절에 하시는 일마다 보람을 거두시기를 바 라며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영입인사)



김주현 변호사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59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81학번)

□경력사항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변호사개업 (대전 새날합동법률사무소)
- 충청하나은행 고문변호사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준법감시인
- 브릿지증권 준법감시인
- 골든브릿지 베트남대표사무소장
- VKONE PARTNERS CO., LTD(베트남 현지컨설팅법인) 대표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하노이 지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새로 합류하게 된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1999년 1월 사법연수원을 제28기로 수료한 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골든브릿지에 입사하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준법감시인, 브릿지증권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2005년말 골든브릿지가 베트남대표사무소를 개소할 때 초대 대표사무소장으로 하노이에 파견되어 활동하였고, 2006년말 하노이에 VKONE PARTNERS라는 컨설팅법인을설립하여 최근까지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업무를 해온 바 있습니다.

2007년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베트남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이번에하노이지사를 개설하게 된 것을 계기로 동 법인에 합류하여하노이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만 3년가까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이그 동안 한국과 베트남에서 축적해온 전문성을 극대화시켜,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투자에서 직면하게 되는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투자의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입인사)



김범희 변호사·변리사

□학력사항

- 부산고등학교 졸업 (40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87학번)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기계설계학과 졸업 (91학번)
-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 연구과정 수료 (2000)
- 서울대학교 전문법학과정(인터넷과 법률) 수료 (2001)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연구원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법무법인 케이씨엘 지적재산권팀 변호사/변리사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과정 민사소송법 강사
- 대한변리사회 회원(2000~)
- 한국지적재산권협회 회원(2000~)
- 아시아변리사회(APPA) 회원(2000~)
-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회원(2000~)
- 한국정보법학회 회원(2004~)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지적재산권) (2007. 9. ~ 현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사말

지난 9월 16일부터 지평지성에서 함께 일하게 된 김범희 변 호사입니다.

저는 공학석사 학위 취득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 들을 위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부 정경쟁행위 등 IP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자문 및 소송 업무 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단국대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과정 강사, 로앤비 강사 등으로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 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의 자세로 돌아가 고객 여러분 에게 보다 충실하고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입인사)



신진호 변호사

□학력사항

- 대일 고등학교(18회)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94학번)

□경력사항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 세경 소속변호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새로이 합류하게 된 신진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간의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세경에서 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다른 팀원 들과 함께 지평지성의 해상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능한 선배 변호사님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데 감사 드리며, 앞으로 고객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노 력하겠습니다.

(영입인사)



송유진 영국변호사

□학력사항

- The University of York 정치경제철학 학부 졸업 (2001년)
- The College of Law (London) 법학학부이수과정 졸업 (2002
- Inns of Court School of Law (London) 형사소송전공 법학석 사 취득(2003년)
- Inns of Court School of Law (London) Barrister 양성과정 로 스쿨 졸업(2004년)
- England and Wales 법정변호사자격취득 (called by Lincoln's Inn) (2004년)
- The University of Southampton (Southampton) 해상·국제무 역 전공 법학석사 취득(2005년)

□경력사항

- 법무법인 세경 근무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영국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새로이 합류하게 된 송유진 영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법정변호사 자격(Barrister-at-law)을 취득한 후, 해상과 국제거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상법 분야에 권위 있는 대학인The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해상·국제무역 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법무법인 세경에서 해상업무를 하다가, 이 번에 같이 일하던 팀원과 함께 지평지성의 해상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훌륭하신 국내·외국 변호사님들과 더불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지평지성이 글 로벌 명문로펌으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02)6050-1600 Fax: 02)6050-1700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61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